

방해배제청구, 스마트미디어 환경 하에서 꼭 필요

아빠는 강패? 아니 땐 굴뚝에 났던 연기, 이제는 그만



유명 대학교수의 초등학교 아들이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검색하다가 댁님 이런 질문을 했다. “아빠 진짜 강패야?” 교수는 아들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알 수 없어 당황했지만 잠시 후, 5년 전 폭행사건에 휘말렸던 일이 떠올랐다. 취객이 자신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다가 혼자 넘어졌고 교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당시 한 언론사가 “대학교수 ○○○, 알고 보니 싸움꾼?”이라는 제목으로 교수가 취객을 넘어뜨렸다고 보도한 것이다. 교수는 보도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5년이 지나서야 사실과 다른 잘못된 기사가 포털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2005년 제정된 언론중재법을 기반으로 정정·반론·추후보도와 손해배상을 통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 제정되어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그 사이 미디어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특히 인터넷 언론매체의 수가 증가하였고,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함께 기사의 파급력 역시 커졌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

한 피해도 늘어났다.

언론중재법 제정과 더불어 피해구제방법이 보다 다양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잘못된 기사를 여전히 인터넷으로 볼 수 있다며 아쉬워한다. 아무리 정정보도나 반론보도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원래의 기사를 본 사람들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라고 말하며 손가락질 하는 것 같아 괴로움을 느낄 수 있다. 또 위에서 언급한 사례처럼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보도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를 할 수 없어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언론중재위원회는 작년 10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개정안은 이른바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근거로 하여 기사의 수정·보완·삭제 등의 청구를 명문화하였다. 첫째, 보도 내용이 허위이고 인격권 등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둘째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 셋째 인격권 그 밖의 권리를 계속적으로 중대하게 침해하여 방지하면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단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안 후 1년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입법에 성공

하면 방해배제청구를 근거로 문제의 기사가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 노출되는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물론 개정안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피해자들이 정정·반론·추후보도보다는 기사의 삭제를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사삭제 청구가 남발될 것이고, 언론사들이 기사삭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기사삭제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면 온전한 피해 구제를 위하여 삭제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 기사 삭제청구의 요건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인쇄매체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없는 언론사 내부의 데이터베이스는 삭제되지 않으므로 언론사의 표현을 근본적으로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잘못된 표현으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가 명백하다면, 표현의 자유 보장 못지않게 피해 구제도 중요하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방해배제청구를 통하여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침해된 피해자의 인격권이 한 단계 더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